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이영실 의원 외 23명
- 나. 의안번호: 제456호
- 다. 발의일자: 2023. 2. 3.
- 라. 회부일자: 2023. 2. 9.

###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며,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위원회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 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축소함(안 제10조).

- 다. 녹색건축물의 확대 및 녹색교통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17조 및 제18조).
- 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8조~제30조).

##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기후위기 대응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지역사회 이행·확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

### 나. 검토 의견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제2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는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안 제5조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 전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현행 시장과 시민의 책무 외에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유인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8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9조는 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 시의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과 내실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또는 임시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20조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축적·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보 및 통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이외에도 안 제22조의3부터 제30조까지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이는 상위법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음.